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01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아동·노인·장애인 방임가정 내 방치되고 있는 동물의 구조·보호 ..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8.

다.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적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을 포함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반려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때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아동·노인·장애인 방임가정 내 방치되고 있는 동물의 구조·보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보호해야 하는 대상 동물에 아동·노인·장애인을 방임(放任)하는 가정에서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동물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아동·노인·장애인을 방임(放任)하는 가정에서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 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생략) ② ~ ④ (생략)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 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 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략)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u>고 있는 동물</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 ----- ----- ----- -----. 1.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 4호-----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 -----제3 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 ----- ----- -----.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4. (생략)	----- ----- 3. 4. (현행과 같음)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규정하는 한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있음¹⁾²⁾³⁾.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그런데, 아동·노인·장애인을 방임하는 가정에서 반려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 해당 동물 역시도 방치하여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분변·오물 등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분변·오물 등을 제거하지 않음에 따라 가정 내 위생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동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는 한편, 이차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동·노인·장애인의 생활환경 역시도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안 제34조는 아동·노인·장애인을 방임하는 가정에서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동물이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제도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법상 동물의 구조·보호 제도의 대상 중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 포함되어 있는데,⁴⁾

4)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현행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동물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⁵⁾, 사육·관리·보호 의무 중에는 반려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거나,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가정이 아동·노인·장애인을 방임하고 있는 가정인지와 무관하게, 동물이 방치되고 있다면 해당 동물은 소유자등이 현행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대를 받은 것으로서,

5)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⑤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란 별표 2에 따른 사육·관리·보호의무를 말한다.

[별표 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1. 동물의 사육공간(동물이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곳으로서 벽, 칸막이, 그 밖에 해당 동물의 습성에 맞는 설비로 구축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바.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빗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동물에게 질병(곰팡이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다.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마.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 사. 동물의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 논의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아동·노인·장애인을 방임하고 있는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면, 이는 해당 동물을 구조·보호 제도의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는 입법의 미비라기보다는, 법률 규정의 집행과정에서 동물소유자등의 반발 등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어 보임.

안 제41조·제42조 및 제43조는, 안 제34조가 방치되고 있는 동물을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제도의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구조·보호한 이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 부담,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수용 여부는 안 제34조의 수용 여부와 함께 결정이 이루어질 사안으로 생각됨.

한편, 현행법 제41조·제42조 및 제43조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 부담,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해당 동물이 현행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인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동물인지를 구분⁶⁾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6) 현행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은 같은 항 제3호의 동물과 비교하여, 보호조치 시점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제1호: 유실·유기동물(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현행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의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종류에 따른 구분 】

구분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
제41조 (동물의 반환 등)	○ 소유자가 <u>반환을 요구하는 경우</u> 반환	○ 소유자가 <u>다음은 모두 만족한 후</u> <u>반환을 요구하는 경우</u> 반환 - 제34조제3항에 따른 <u>보호기간</u> 경과 - 제2항에 따른 <u>사육계획서</u> 제출 - 제42조제2항에 따른 <u>보호비용</u> 부담
제42조 (보호비용의 부담)	○ 보호비용을 <u>소유자 또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u> <u>게 청구할 수 있음</u>	○ 보호비용은 동물의 <u>소유자가</u> <u>내야 함</u> - 다만,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 제2호에 따라 <u>소유권을 포기한</u> <u>경우</u> 보호비용의 <u>전부 또는 일</u> <u>부를 면제할 수 있음</u>
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 다음의 경우 시·도 및 시·군 ·구가 소유권을 취득 - 제40조에 따라 <u>공고한 날부터</u> <u>10일이 지나도</u> 소유자등을 알 <u>수 없는 경우</u>	○ 다음의 경우 시·도 및 시·군 ·구가 소유권을 취득 - 소유자의 <u>소유권 포기</u> - 소유자의 <u>보호비용 미납부</u> 또는 <u>사육계획서 미제출</u>

개정안은 안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① 안 제41조 및 제42조에서는 현행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안 제43조에서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동물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2호: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3호: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특히, 안 제34조제1항제4호의 방치되고 있는 동물은 현행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의 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는바,

해당 동물을 현행법 제34조제1항제3호와 안 제34조제1항제4호 중 어느 쪽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동물의 반환 및 보호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제41조 및 제42조)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동·노인·장애인을 방임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적절한 사육·관리를 받지 못해 질병·상해가 발생한 반려동물은 이미 구조·보호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